

第 18 回 臨時會

2005. 9. 5(月)

檢 討 報 告 書

계룡 문화의 집 및 암사 문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(안)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-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(안) -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의거 생활속의 문화 공간인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 문화쉼터를 조성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

□ 主要内容

-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 문화쉼터의 목적규정(안 제1조)
-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 문화쉼터에서 운영관리 할 시설내용과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주체와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 내지 제8조)
-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,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(안 제9조, 제10조)

□ 檢討意見

- 본 제정 조례안은,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을 근거로 계룡시의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생활속의 문화 공간인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 문화쉼터를 조성하고 그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,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